

협력업체 선정·운용 가이드라인

I. 목 적

본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II. 협력업체 선정 · 운용 가이드라인

1. 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
- 가.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 포함)심사 개시 30일 전에 사업장, 전자매체(홈페이지)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.
- 나.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 (전자문서 포함)으로 개별 통지한다.
- 다.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(전자문서포함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(전자문서 포함) 통지한다.
- 라. 신규업체 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하며, “등록의뢰 요청서”와 “회사 소개서”를 검토하여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 만족여부를 검토한다.
- 마. 등록업체는 거래기간(1년 기준) 및 거래 특성에 따라 임시, 일반, 정규 등록업체로 구분한다.
 - 임시: 당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물품을 당사의 사양서, 도면에 의해 설계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 신규등록 시
 - 일반: 전문 특화 품목, 내자성 규격품, 내외자 저장품, 내외자 시설재 공급업체 신규등록 시
 - 정규: 임시등록 된 협력사가 1년 동안 공사를 수행하고, 정기평가 및 경영평가 등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당사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할 시

2.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
< 선정기준 >

- 가. 회사 설립연차가 최소 1년 이상인 업체
- 나.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지속적인 거래유지가 가능함이 확인될 경우
- 다.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,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
- 라. 개발 및 조달그룹 검토 결과,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,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개발품이 발생한 경우
- 마.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등록이 필요한 경우
- 바.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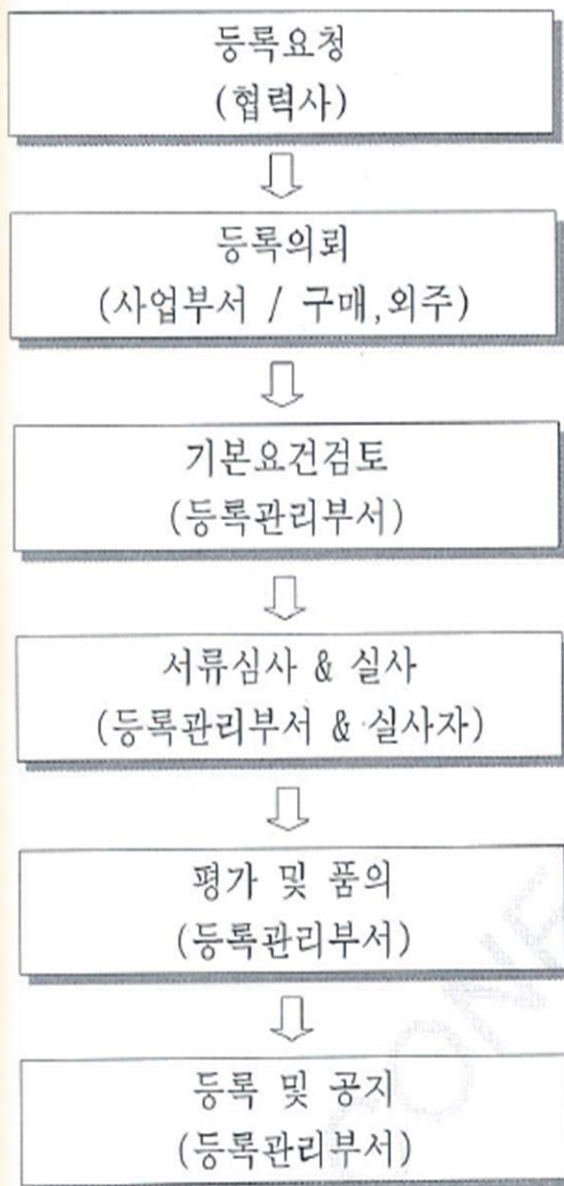
< 등록절차 >

기본적으로 협력사 등록요청, 내부 등록의뢰, 검토, 평가 품의 등의 과정을 거쳐 등록하되, 일반등록, 임시등록, 정규등록의 업무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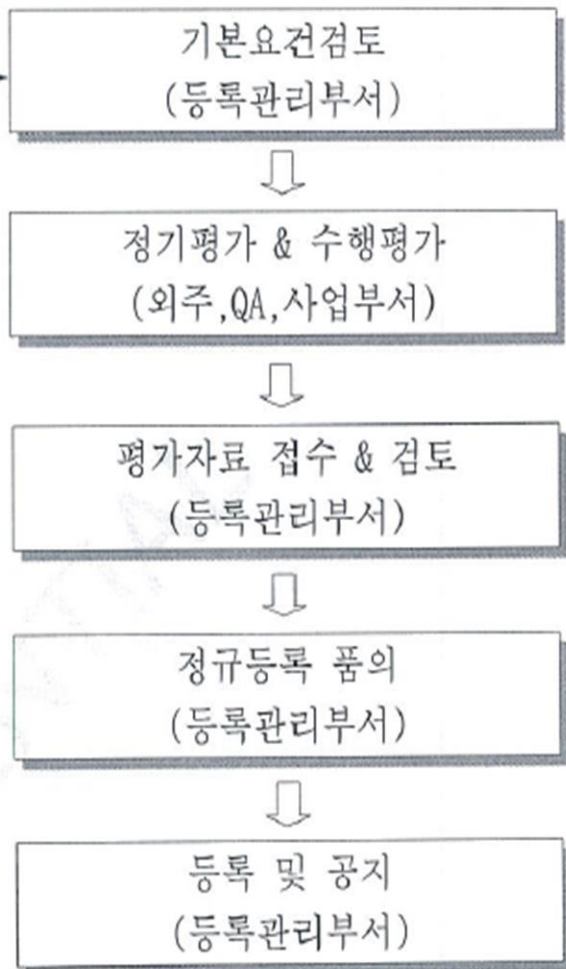
- 가. 임시: '협력회사일반현황' 조사자료와 '실사평가서'를 바탕으로 평가 진행, 평가결과 60점(평가등급 C)이상 시 등록
- 나. 일반: '협력회사 Check List'를 바탕으로 등록여부 검토 (협력회사일반현황 자료접수, 단 실사는 제외)
- 다. 정규: 임시등록업체로 1년 이상 계속적인 거래가 있으며, 연간 거래 금액 2억 이상, 당사 의존도 20% 이상인 업체로 경영평가 및 수행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(평가등급 C) 이상 시 등록

[주 요 절 차]

- 일반 / 임시등록 -



- 정규등록 -



(임시등록 1년 경과 후 정규등록 자격부여)

3.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
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, 등록관리 부서로 의뢰할 수 있으며, 등록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, 최종 등록취소확정 결재를 득한 후 결재가 가능함.

< 등록취소 기준 >

- 가. 품질 및 납기,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
- 나.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다.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- 라. 하도급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- 마.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
- 바. 협력업체 등록 평가 시 기준 점수 미달인 업체의 경우

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 취소(중단)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.

- 가. 원가절감계획,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
- 나. 경쟁사업자의 협력회사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
- 다. 협력회사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

협력회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(전자문서포함)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.

Ⅲ.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

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한다.